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설치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00. 00. ~ 2025.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대상 아님

총리령 제 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제178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u>2025년</u> <u>1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u> <u>1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